

1. 개정이유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모두 청약에 당첨되면 이를 모두 부적격 처리하던 것을 선 신청분에 대하여는 유효처리함으로써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약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청약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혼인신고 지연 및 미신고 유인을 해소하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며,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청약신청자의 청약정보가 제한되고 부적격자 등과의 계약체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입주자선정 절차를 최대 2회 실시토록 하는 한편,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미달이 발생될 때까지 입주자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3회까지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안 제23조, 제41조, 제43조)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를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

-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위해 소득 단계별
추첨자 선정방법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

나.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 마련 (안 제35조의3)

- 공공분양에서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를 규칙에 마련

다.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안 제4조, 제14조, 제19조, 제55조의2, 제57조,
제58조의5)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
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에는 선 접수분에 대해 유효한 당
첨으로 인정

라.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안 제40조)

-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마.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안 제55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주택청
약신청자의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미고려

바.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안 제2조, 제
19조, 제26조)

-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최대 2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
(규제지역은 최대 3회)

사. 20세대 미만의 계약취소분 주택 공급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

되 (안 제50조)

- 불법전매 등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공급

아. 규정 미비사항 정비 등 (안 제48조)

- 입주자저축이 필요한 청년 특별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제19조제5항제2호 후단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주택**”으로 한다.

제1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5조의2제3항 또는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부부(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중복당첨된 경우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자의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만, 입주자모집 결과 공급세대수 보다 신청자수가 적은 경우이거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횟수만큼 입주자 모집을 의뢰한 이후에는 선착순의 방법

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3회

나. 그 밖의 지역 : 2회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 등이 주택공급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신청자에게 접수일자 및 접수시간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제2호의2는 당첨된 이후 공급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 제4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당첨된 경우 그 특별공급의 요건이 되는 자녀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제26조제5항 단서 중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를 “**공급한다**”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임신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제1항 중 “세 명”을 “두 명”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제1호나목의 요건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 방법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을 “순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 주택 수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41조제3항제1호 전단 중 “50퍼센트”를 “15퍼센트”로, “우선 공급한다”를 “공급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급 순위는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항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제1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1조제3항제4호(중전의 제2호) 전단 중 “20퍼센트”를 “15퍼센트”로, “요건”을 “요건(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으로, “사람에게”를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요건”을 “요건(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으로, “사람”을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제1호나목의 요건은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공급 방법에만 적용한다)”으로, “따른”을 “따르거나 추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 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을 “순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 주택 수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41조제6항제1호 전단 중 “7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4항제2호 및 제5항”을 “제5항 각 호의 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5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제4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제1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제4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제4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요건(제3호의 요건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공급방법에만 적용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 주택 수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제2호나목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제1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제2호나목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제3호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요건**”을 “**요건(제3호의 요건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공급 방법에만 적용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을 “**순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 주택 수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43조제4항제1호 중 “**5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으로,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으로, “**우선 공급한다**”를 “**공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

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으로,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으로, “**사람에게**”를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요건**”을 “**요건(제3호는 제외한다)**”으로, “**사람**”을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제2호나목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제1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제2호나목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으로, “**제41조제1항**”을 “**제41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47조의3(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47조의3**”으로 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부부 중복당첨에 관한 특례) ①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1인 1주택 기준으로 중복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부가 모두 당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의 신청 접수일(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접수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1. 부부 모두 제35조 내지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2. 부부 모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3. 부부 모두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4. 부부가 제1호 내지 제3호 중 서로 다른 사유로 모두 당첨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③ 제2항의 주택 중 유효하지 않은 주택에 당첨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3(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 제41조 및 제43조의 특별공급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혼인신고 전의 사항에 한정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

2.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 명단 관리로 인한 당첨 제한

제57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5조의2제3항 및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자

제58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의 신청 및 당첨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00. 00.>

국민주택등 공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시간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주택위치				주거전용면적(㎡)				
	모집유형		[]사전청약		[]일반청약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 ·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입주자저축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1순위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액			원	납입회수		회		
확인사항	가입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은행		지점		(인)	

위와 같이 국민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서약서 1부 2.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 사업주체 등은 접수 후 아래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십시오.
3. 접수시간은 ‘분’ 단위까지 기재하십시오.

<절취선>

국민주택등 공급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시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주택명		
	단지명		
	주택형		

위와 같이 공급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00. 00.>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시간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주택위치		주거전용면적(㎡)	
	모집유형	[]사전청약	[]일반청약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입주자저축	종류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1순위		
가입은행	계좌번호			
	예입액 또는 납입액	원	가입일	년 월 일
확인사항	위와 같이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은행		지점	(인)

위와 같이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 사업주체 등은 접수 후 아래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십시오.
3. 접수시간은 '분' 단위까지 기재하십시오.

<절취선>

민영주택 공급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시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주택명	
	단지명	
	주택형	

위와 같이 공급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특별공급 신청 접수증

- 1.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2. 접수시간은 ‘분’ 단위까지 기재하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시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주택명	
	단지명	
	주택형	

위와 같이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공급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0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7. ----- -----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u>사람</u>	라. ----- ----- ---- <u>사람(제19조제5항제2호 후단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외한다)</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마. ~ 카. (생 략)	마. ~ 카. (현행과 같음)

7의2. ~ 10. (생략)	7의2. ~ 10. (현행과 같음)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1. ----- ----- ----- ----- 1주택-----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제55조의2제3항 또는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부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① ~

④ (생략)

⑤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생략)

2. 제26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가 중복당첨된 경우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자의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공급세대수 보다 신청자수가 적은 경우이거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횟수만큼 입주자 모집을 의뢰한 이후에는 선착순의 방

<신 설>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 3회

나. 그 밖의 지역 : 2회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 등이 주택공급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신청자에게 접수일자 및 접수시간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있으며,
제2호의2는 당첨된 이후 공급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같은 조 제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거나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⑤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
자에 대해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해야 한
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
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
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에
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
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신 설>

.....

.....

.....

.....

.....

.....

.....

.....

.....

.....

..... 공급

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임신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
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u>세 명</u>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 ----- ----- ----- ----- ----- ----- <u>두 명</u>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85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
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u>자</u> 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	----- ----- ----- ----- ----- ----- ----- ----- ----- ----- <u>자(제1호나목의 요건</u> ----- <u>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공급</u>

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요건

가. (생략)

<신설>

다.·라. (생략)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후단 신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방법에만 적용한다)-----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순서-----
----- 이 경우 각 호의 대상 주택 수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 15퍼센트-----

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 순위는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 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 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

한 사람 중 제1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 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4. -----
 -- 15퍼센트----- 요건
(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

 -----.

 -----.

5. -----
 ----- 요건
(제1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

④ -----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요건

가. (생략)

<신설>

나. (생략)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신설>

사람(제1호나목의 요건은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 방법에만 적용한다)--- 따르거나 추천의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현행 나목과 같음)

<삭제>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

2. (생략)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후단 신설>

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 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순서-----
-----. 이 경우 각 호의 대상 주택 수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0 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제4항제2호 및 제5항의 공급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신 설>

다.

1. ----- 15
퍼센트-----

 ----- 제5항 각 호의 순서-----
 -----.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5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신 설>

요건(제4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제1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제4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

<신 설>

⑦ (생략)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항에 따른다.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은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
(제4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
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
로 공급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

----- 요건(제3호의
요건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공급방법에만 적용한다)-----

----- . 이 경
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

1. (생 략)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신 설>

3. (생 략)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
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0퍼센
트 이하인 자

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
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
람으로서 제5호에 해당하
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임
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신 설>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것

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
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
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
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
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
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 주택 수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

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제2호나목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제1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제2호나목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제3호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9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생 략)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생 략)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

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③ -----

요건(제3호의 요건은 제4항제1
호 및 제2호의 공급 방법에만
적용한다)-----

---. -----
----- 세대별 주민등록표-----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3. 4.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후단 신 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 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 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 제5호-----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④ -----
----- 순서-----
----- . 이 경우 각 호의 대상 주택 수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하
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다.

1. ----- 15 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 (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 사람 중 -----

----- 공급한다.
2. ----- 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제4호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신 설>

<신 설>

-- 사람 중 -----

-----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
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
(제2호나목 및 제3호는 제외
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
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제1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
한다)에게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
퍼센트는 제3항 각 호의 요건
(제2호나목 및 제3호는 제외
한다)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
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의 <u>요건</u>을 모두 갖춘 <u>사람</u>에게 <u>추첨의 방법</u>으로 공급한다.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u>제외한다</u>),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및 제8호의2를 <u>제외한다</u>],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u>제41조제1항</u>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 (생략)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	<u>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u> 5. ----- ----- <u>요건(제3호는 제외한다)</u>----- -- <u>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u>-- --.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 ----- ----- <u>제외한다</u>), 제35조의2, 제35조의3----- ----- ----- ----- <u>제41조</u>----- ----- ----- -----. 1. 2. (현행과 같음)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
--	---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청약접수

가. (생략)

나. 제19조제5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 (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2.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제47조의3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부부 중복당첨에 관한 특례) ①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1인 1주택 기준으로 중복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부가 모두

당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의 신청 접수일(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접수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1. 부부 모두 제35조 내지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2. 부부 모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3. 부부 모두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4. 부부가 당첨된 주택이 제1호 내지 제3호 중 서로 다른 사유로 모두 당첨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③ 제2항의 주택 중 유효하지 않은 주택에 당첨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당

<신 설>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
 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
 주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제
 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

참자로 관리하지 아니하며, 같
 은 조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55조의3(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의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 제4
 1조 및 제43조의 특별공급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혼인신고
 전의 사항에 한정한다)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른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
2.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
 명단 관리로 인한 당첨 제한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증기관을 말한다)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⑤ ~ ⑨ (생략)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② (생략)

<신 설>

_____.

1. ~ 6. (현행과 같음)

7. 제55조의2제3항 및 제58조의
5제2항에 따라 부부가 중복당
첨된 경우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자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
은 사전청약의 신청 및 당첨에
관하여는 제55조의2를 준용한
다.